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751

발의연월일: 2024. 10. 17.

발 의 자: 민형배·김영배·이수진

김성환 · 곽상언 · 소병훈

김용민 · 김문수 · 한민수

주철현 · 이강일 · 이개호

이기헌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관광 분야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, 다자녀 가구의 여행 및 관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.

최근 우리나라 저출생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주거·양육·교육 지원 및 세금 감면 등 다각도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

현실은 자녀를 3명 이상 키우면 혜택은커녕 불편한 점이 더 많습니다. 대부분 숙박시설은 5인 가족 예약 시 객실 2개를 예약해야 합니다. 호텔 등 숙박업소 내부규정에 따라 제각각 운영하는 탓입니다. 숙박 및 관광시설 이용에도 다자녀 가구 특성을 고려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

이에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 가구의 여행 및 관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. 다자녀 가구에 대한

일상 속 정책 지원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일조하기 위한 것입니다(안 제47조의3).

법률 제 호
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의3의 제목 중 "고령자"를 "고령자·다자녀 가구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가구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숙박·관광시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	개 정 안
제47조의3(장애인 · <u>고령자</u>	관광	제47조의3(장애인 · <u>고령자 · 다자</u>
활동의 지원) ①·② (생	략)	<u>녀 가구</u> 관광 활동의 지원) ①
		· 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	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
		자녀 가구의 관광 활동을 지원
		하기 위하여 숙박・관광시설
		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필
		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